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0
------	-----

2018. 12. 17.
기 획 경 제 위 원 회

I .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8년 10월 16일, 이광호 의원

나. 회부일자 : 2018년 10월 2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제10차 기획경제위원회(2018.12.17.)상정, 제안설명, 검토
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이광호 의원)

1. 제안이유

가. 현행 조례에서 투자·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지원금 상환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으나,

규칙이 미제정된 상태이므로, 조례에 지원금 상환방식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원금의 상환방식을 규정함(안 제9조제4항).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투자기금의 지원금 상환 방식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나. 사회투자기금 현황

- 서울시는 2012년부터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사회투자기금을 설치·운영 중이며, 2017년까지 331개 기업에 817억원을 융자했음.

〈 연도별 사회투자기금 용자지원 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원 금액	합계	81,715	21,123	9,348	15,954	21,331	13,960
	市 기금	63,548	10,900	7,488	14,612	20,664	9,884 ¹⁾
	민간자금	18,208	10,223	1,860	1,342	667	4,116
지원 기업수		331	71	46	68	78	68

- 관련 법령의 개정²⁾으로 기금의 민간위탁이 전면 금지된 2017년부터는 사회투자기금을 직영 체계로 운영 중에 있으며, 민간의 사회적 금융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각 수행기관이 일정비율의 자금을 확대 조성한 후, 사회적경제기업에 채용자하고 있음.
- 2018년 9월 현재 채권잔액은 427억 6천 4백만원으로, 최대 용자 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기금의 회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으므로 용자금의 적기 회수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 사회투자기금 용자/회수 내역 〉

('18년 9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도별 채권 잔액		10,900	15,790	25,388	40,462	41,335	42,764
채권 이월액 (A-B)	42,764	10,900	4,890	9,598	15,074	873	1,429

1) 9,884백만원 : '17년도 사회투자기금 교부액(市 → 사회적금융기관) 기준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015년 7월 개정, 2017년 1월1일 시행

(’18년 9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출	용자금 (A)	69,164	10,900	7,488	14,612	20,664	9,884	5,616
수입	용자원금상환 (B)	26,400	0	2,598	5,014	5,590	9,011	4,187

다. 상환방식 규정에 대한 필요성(안 제9조제4항)

- 현행 조례는 사회투자기금 투·용자 지원금에 대한 상환 의무만 규정
한 채,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음.
- 그러나 조례 제정으로 관련 규정이 마련된 2012년 이후 상환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재까지 세부 상환 방법에 관한 규칙은 제정
되어 있지 않음.
 - 관련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는 규칙을 통해 용자 조건과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³⁾.
- 이에 개정안과 같이 채권 관리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용자조건) ①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용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자금은 10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2년 만기 일시 상환
2.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3.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4.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② 시설자금의 지원사업별 용자조건 및 용자한도액은 별표 3과 같다.

입법미비사항을 치유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에 채용자된 기금의 상환에도 적절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개정안에서는 지원금 상환방식으로 ▷균등분할 상환, ▷중도 일시 상환, ▷지원기간 종료 시 일시 상환 등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거치기간 없이 일률적으로 균등분할 상환할 경우 용자받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초기 상환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고, 사회주택 용자에 적용된 보증금, 월세, 일부 분할-만기 일시상환 등의 다양한 상환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게 됨.
- 실제로 사회주택 용자 중 대부분이 일부 분할 상환 후 잔액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용자를 받고 있어, 개정안의 상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⁴⁾.
- 따라서 현재 용자중인 지원금의 상환조건 모두를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실제로 사회주택 용자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 시기 보증금을 통해 일부 상환, 임차인 입주 후 안정화시기까지 월세를 통해 일부 분할 상환, 이후 안정화되는 시점에 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용자했음.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9조(기금의 관리) ④ ----- ----- . <u>지원금</u> <u>상환방식은 지원 받은 자의 경제</u> <u>적 사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u> <u>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균등분할 상환</u> 2. <u>중도 일시 상환</u> 3. <u>지원기간 종료 시 일시 상환</u> 	<p>제9조(기금의 관리) ④ ----- ----- .(개정안 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u>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상환</u> <u>방법</u>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 「없음」

가. 수정이유

- 개정안 각 호의 상환 방식만으로는 기 지원된 용자 상환 조건을 전부 적용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지원금의 상환방식에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상환 방법”을 추가함.
(안 제9조제4항제4호 신설)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70
----------	--------

제안년월일 : 2018년 12월 17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 각 호의 상환 방식만으로는 기 지원된 융자 상환 조건을 전부 적용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가. 지원금의 상환방식에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상환 방법”을 추가함.

(안 제9조제4항제4호 신설)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상환 방법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9조(기금의 관리) ① ~ ③ (생략)</p> <p>④ 제4조에 따라 투자 · 용자지원을 받은 자 는 그 지원금을 상환 하여야 한다. <u>지원금 상환에 관한 세부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 <신 설> <신 설></p> <p>⑤ (생략)</p>	<p>제9조(기금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 <u>지원금 상환방식 은 지원 받은 자의 경 제적 사정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방법으로 할 수 있 다.</u></p> <p>1. <u>균등분할 상환</u> 2. <u>중도 일시 상환</u> 3. <u>지원기간 종료 시 일시 상환</u></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기금의 관리) ① ~ ③ (개정안과 같음)</p> <p>④ ----- ----- -----</p> <p>--.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3. (개정안과 같음) 4. <u>그 밖에 시장이 정 하는 상환 방법</u></p> <p>⑤ (개정안과 같음)</p>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4조에 따라 투자·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지원금 상환방식은 지원 받은 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균등분할 상환
 2. 중도 일시 상환
 3. 지원기간 종료 시 일시 상환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상환 방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p>제9조(기금의 관리) ① ~ ③ (생략)</p> <p>④ 제4조에 따라 투자·용자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u>지원금 상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⑤ (생략)</p>	<p>제9조(기금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u>지원금 상환방식은 지원 받은 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u></p> <p><u>1. 균등분할 상환</u></p> <p><u>2. 중도 일시 상환</u></p> <p><u>3. 지원기간 종료 시 일시 상환</u></p> <p><u>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상환 방법</u></p> <p>⑤ (현행과 같음)</p>